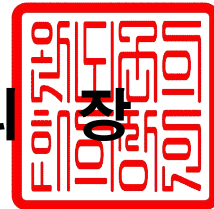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 박재선 의원
3. 제정이유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개정 2023. 7. 11.)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리선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어업별 관리선 규모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2조)

5. 관련법령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6.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9.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5,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척수”를 “척수 및 규모의”로 한다.

제2조 제목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로 제목 외의 부분 중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으로, “기준은 별표와”를 “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로 한다.

제3조 및 부칙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리선의 규모(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 먼허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정치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동력어선
나.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인 동력어선

2.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